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日本国産米の貸借に関する契約に関連する交換公文

(略称) 韓国との日本国産米の貸借契約に関連する取極

昭和四十四年三月十二日 東京で

昭和四十四年三月十二日 効力発生

昭和四十四年二月二十四日 告示

(外務省告示第五三号)

目 次

韓国側書簡

ページ

国内産米貸借契約の概要	二八一
同契約に関する了解事項	二八一
1 契約実施のための措置	二八二
2 便宜供与	二八二
3 協議	二八二
日本側書簡	二八三

韓國側書
国内產米
貸借契約
概要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日本国産米の貸借に関する
契約に関連する交換公文)

1969년 3월 12일
서울교수 이서

(韓國側書簡)

(訳文)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した。本使は、本年三月十一日(即ち日本東京において大韓民国調達庁と日本国農林省食糧庁との間で締結された「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日本国産米の貸借に関する契約」(以下「契約」といふ。)に言及する光榮を有します。前記の契約には主として次の事項が定められています。

- (a) 日本国農林省食糧庁(以下「貸付者」といふ。)は、日本國産水稻うるち玄米三十三万三千トンを千九百六十九年三月から同年八月までの間に大韓民国調達庁(以下「借受者」といふ。)に対し貸し付ける。
借受者は、貸付けに係る米穀と等質等量の韓国産水稻うるち玄米を、千九百八十年から千九百九十九年までの間ににおいて、各年一万六千六百五十トンずつ貸付者に返還する。

(c) 貸付けに係る米穀の受渡しは、日本国の港における本船積込(F.O.B. stowed)とし、返還に係る米穀の受渡

しは、日本国の港における本船乗渡し(C.I.F.)とする。

- (d) 借受者は、貸付者に対し、貸付手数料として、貸付け時に三百萬米ドル及び返還時に貸付者が返還を受けたのを要する経費相当額を支払うものとする。

韓国との日本国産米の貸借契約に関連する取締

부록

본문은 구체 3월 11일 일본국 도쿄교수에 있어서 대한민국 고령청과 일본국 동일성 차관청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산 미국의 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제69회 이탁함」)에 언급 하여, 전기의 제69회는 주로 이탁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음을 인정하는 명성을 가집니다.

가. 일본국 농림성 식량부(이하 「대부처」라고 함)은 일본국 산수도장 원미 333천톤을 1969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의 기간에

대한민국 고령청(이하 「차용처」라고 함)에 대부하여 사용한다.

나. 차용자는 대부하는 미국과 동일 동량의 한국산 수도장 원미를 1969년 3월 11일 기준으로 미금 16,050포트(1,050,000원)에 반환한다.

다. 대부하는 미국의 인수도는 일본국 험구에 있어서의 본선직업도(F.O.B. Stowage)로 하되, 반환하는 미국의 인수도는 일본국 험구에 있어서 본선직업도(C.I.F.)로 한다.

라. 차용자는 대부자와 미국의 대부 수수료로서 대부에서 300만 베일증금을 및 반환시에 대부자가 반환 받는 때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韓国との日本国産米の貸借契約に関連する取扱

一一一

同契約了
に関する事項

契約実施
ための措
置

本使は、契約の締結について韓国側が満足の意を表明した旨を閣下に通報するとともに、契約が両国の友好関係の発展のために有する意義を認め、契約に関する次の了解を大韓民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します。

1 両国政府は、それぞれの国内法令の範囲内で、契約の円滑かつ適時の実施を促進し、かつ、この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便宜供与

2 契約に基づく米の輸出及び輸入に関する業務にもつぱら從事する大韓国民及び日本国民は、その業務の遂行のための相手国への入国及び相手国における滞在につきそれぞれの国内法令の範囲内で必要な便宜を与えるものとする。

協議

協議

3 両国政府は、この了解から、又はそれに関連して生ずるところがあるいかなる事項についても相互に協議するものとする。

本使は、閣下が前記の了解を日本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されれば幸いであります。

本使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六十九年三月二十一日に東京で

大韓民国特命全権大使 嶽 敏 永

본 협정은 제국의 계약에 있어서 한글판이 민족의 단체로 표기되어
각국에 제출되는 문서에, 각국이 양국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
각국의 의사를 인정하며, 각국의 권리와 책임은 각국민에게
각국의 실시를 확장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 확장되는 경우에
제국에게 확장된다.

1. 양국은 각국과 그 국내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국의 단체로
각국의 실시를 확장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 확장되는 경우에
제국에게 확장된다.

2. 제국이 국가이며 미국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일부에 오는
증여하는 대한민국 및 일본국 국민은, 그 일부의 수출을 위한
증여는 대한민국 및 일본국 국민에 있어서의 권리에 관하여
각국과 국내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면허를 공여하는 것으로
한다.

3. 양국은 이 협약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와
관련하여 서로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은 각국의 권리와 책임은 각국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국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각국의 실시를 확장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 확장되는 경우에
제국에게 확장된다.

日本国外務大臣 愛知揆一閣下

日本側書
簡

(日本側書簡)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大臣は、本日付けの閣下の次
の書簡を受領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榮を有します。

(韓國側書簡)

本大臣は、さらに日本国政府に代わつて、前記のことが日本
国政府の了解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光榮を有します。

本大臣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閣下に向かつて
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六十九年三月十二日に東京で

日本国外務大臣 愛知揆一

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嶽 敏 永 閣下

(参考)

この取極は、わが方食糧庁と韓国側調達庁との間で締結された国内産米の貸借契約成立に伴い、外交レベルにおいても重ねて契約履行の保証を取り付けるため、両国政府がそれぞれの国内法令の範囲内で、この契約の円滑かつ適時の実施を確保すべく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約したものである。